##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홍기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018 발의연월일: 2024. 11. 28.

발 의 자 : 홍기원 · 이병진 · 박희승

권칠승 • 민형배 • 이정문

김준형 · 조승래 · 허 영

이연희 • 민병덕 • 박상혁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는 "국민"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, 외국 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.

그러나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에 대한 기준이 되는 「국적법」에 근거하지 않은 채 국민과 외국인 개념을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체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「국적법」의 근거로 명확히 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(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).

법률 제 호

###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대한민국의 국민"을 "「국적법」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"을 "제1호에 따른 국민이 아닌 사람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국민"이란 <u>대한민국의 국민</u>	1
을 말한다.	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
	한 사람
2. "외국인"이란 <u>대한민국의 국</u>	2 <u>제1호에</u>
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	따른 국민이 아닌 사람
말한다.	
3. ~ 16. (생 략)	3. ~ 16. (현행과 같음)